

향토생활관 건립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경상북도 성주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·학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공동인식하고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에 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에서 건립하는 향토생활관의 건립비 출연 및 향후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출연금) 성주군은 금300,000,000원(금삼억원)을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비로 대구대학교 발전기금에 출연한다.

제 3 조(명칭부여) 대구대학교는 동 출연금으로 건립하는 향토생활관의 총 30명분에 대하여 “성주군 향토생활관”이라는 명칭을 부여한다.

제 4 조(사용권) “성주군 향토생활관”에 대한 학생 선발권한은 2009학년도 제1학기부터 성주군수에게 위임하며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대학교와 협의한다.

제 5 조(운영) 향토생활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대구대학교가 담당 한다.

제 6 조(세부사항) 대구대학교와 성주군은 본 협약으로 건립되는 향토생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7 조(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대구대학교 총장과 성주군수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상기 협정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.

2009. 1. 15.



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총장 이 용 두

이

용

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번지



성주군

군수 이 창 우

이 창 우

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83-1